

# 『제휴 환전지갑 서비스』 이용약관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합니다)과 제휴 환전지갑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하는 손님(이하 "손님" 이라 합니다) 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제휴 환전지갑 서비스'란 손님이 '제휴사'가 운영하는 채널(홈페이지, 모바일 웹 또는 앱으로 한정됨)을 통해 연결되는 '하나은행'의 모바일 웹 또는 앱에서 환전하여 발생하는 외화를 수령, 보관, 원화로 바꾸기(재환전), 외화계좌로 이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환전'이란 원화를 손님이 신청하는 외화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③ '환전통화'는 손님이 원화를 지급하여 구매하는 외국환 통화를 말합니다.
- ④ '보관'은 환전 완료된 외화를 환전지갑에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⑤ '지급'이란 환전지갑에 보관 중인 외화를 '하나은행'과 '제휴사'간의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손님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의 절차는 양사가 협의하여 '제휴사'가 운영하는 앱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한 내용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⑥ '원화로 바꾸기(재환전)'란 환전지갑에 보관중인 외화를 재환전 신청시점의 현찰 파실 때 환율을 적용하여 다시 원화로 바꾸는 거래를 말합니다.
- ⑦ '외화계좌 이체'는 손님이 연결 등록한 본인명의 하나은행 외화 입출금 계좌로 환전지갑에 보관한 외화를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⑧ '외화구매대금'은 손님이 서비스 신청한 외화를 구매하는 대금(원화)를 말합니다.
- ⑨ '외화수령점'은 손님이 환전지갑 서비스를 통해 신청한 외화현찰을 수령하는 장소로 사전에 지정한 은행지점 및 외화ATM을 말합니다.
- ⑩ '외화ATM'은 손님이 서비스 신청시 지정한 외화수령점에 설치된 외화 현찰수령 가능 ATM을 말합니다.
- ⑪ '제휴사'는 본 서비스를 은행이 이용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과 제휴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 ⑫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외환거래 기본약관」,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3조 (서비스의 이용)

- ① 본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의 국민인 거주자(개인)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서비스는 제휴사 채널을 통해 제공되며, 손님은 이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은행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개시됩니다.
- ③ 손님은 제휴사 채널을 통해 신청인 정보, 환전통화, 환전금액, 외화수령점, 외화수령일 등을 입력하여 환전을 신청합니다. 이때 환율은 환전 신청 시점의 현찰매도율을 기준으로 서비스 신청 화면 및 하나은행에 홈페이지에 명시된 우대율을 적용합니다.
- ④ 이 서비스에서 거래 가능한 외국 통화는 12개 통화로, 해당 통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달러(USD), 일본엔(JPY), 유럽유로(EUR), 호주달러(AUD), 캐나다달러(CAD), 스위스프랑(CHF), 중국위안(CNY), 영국파운드(GBP), 홍콩달러(HKD), 뉴질랜드달러(NZD), 싱가포르달러(SGD), 태국바트(THB)
- ⑤ 제휴사 환전의 대금 결제는 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결제방식, 하나머니 이체방식, 본인 명의의 원화 입출금계좌에 연동 이체 방식에 의하여 인출하며 결제방식은 제휴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후 30분 이내에 외화구매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비스 신청 건은 취소됩니다.
- ⑥ 거래 완료된 후에는 환전(외화계좌이체, 원화로 바꾸기 포함)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⑦ 은행은 외화구매대금 입금 확인 시 해당 서비스 신청건에 해당하는 고유한 환전번호를 손님에게 전달합니다.
- ⑧ 위 제1항은 제휴사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⑨ 선물하기 서비스는 「환전지갑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약관」, 목표환율 자동환전 서비스는 「환전지갑 목표환율 자동환전 서비스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4조 (거래, 보관, 수령 한도)

- ① 손님은 각 제휴사 별 1일 누적 1백만원, 월간 미화환산 1만불(매월1일~말일), 연간 미화환

산 3만불(1.1~12.31) 상당액 이내에서 환전 가능합니다.

- ② 전 제휴사를 합산하여 1일 누적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환전 가능합니다.
- ③ 각 제휴사 별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이내에서 보관 가능합니다.
- ④ 전 제휴사에서의 외화현찰 수령, 원화로 바꾸기(재환전) 및 외화계좌 이체를 모두 합산하여 1일 누적 미화환산 1만불 이내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제5조 (외화 수령)

- ① 외화수령일은 서비스 신청 당일부터 1개월 이내의 날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외화수령점의 환전통화별 보유 한도 범위 내에서 신청에 가능합니다.
- ② 손님은 제1항에서 지정한 외화수령일에 외화수령점으로 손님 본인이 방문하여, 본인 신분증과 환전신청번호 등을 제시하고 은행의 "외국환 매입/매도 신청서"에 자필 서명(또는 인감 날인)한 후 외화 현찰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 불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수령 가능) 단, 외화ATM을 통해 외화 현찰을 수령할 경우 본인 명의의 은행 카드(당/타행 무관)를 지참해야 합니다.
- ③ 위 제2항의 경우, 외화수령점은 국내 소재의 "하나은행" 영업점으로 한정하며,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영업점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화 수령 가능 시간은 외화수령점별 영업시간에 따릅니다.

#### 제6조 (외화 미수령 금액 처리)

- ① 손님이 지정한 외화수령일에 외화 현찰을 수령해가지 않은 경우 수령 신청은 취소되고, 수령하지 않은 외화는 기간 제한 없이 환전지갑에 보관되며 손님은 횟수의 제한 없이 수령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 소재 영업점 등 은행이 정한 일부 외화수령점에서는 손님이 지정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수령 가능합니다.
- ③ 위 제1항에 따라 환전지갑에 보관된 외화는 손님의 선택에 의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의 경우 원화 계좌로 입금 시 입금 시점의 현찰 파실 때 환율이 적용되며 외화계좌로 이체 시 외화현찰로 입금됩니다.
- ⑤ 원화로 바꾸기(재환전) 거래 시점에 환율 상승으로 건당 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본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 또는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제7조 (제휴사 채널)

제휴사에 의한 제휴 환전지갑 서비스 제공은 하나은행과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기 환전손님은 제외) 단, 은행은 제휴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하기 6개월 전부터 월 1회 이상 손님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6개월 전 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고지하도록 합니다.

## 제8조 (거래 내용의 고지)

본 서비스를 통해 환전 신청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않거나 본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외화 금액에 대하여 은행은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손님에게 통지합니다. 은행의 고의나 과실없이 손님이 부정확한 연락처를 제공하여 은행의 통지가 손님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은행이 해당 연락처로 통지를 발송한 때에 손님에게 적법하게 고지한 것으로 봅니다.

## 제9조 (서비스의 제한)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손님의 서비스 신청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① 본 서비스의 신청금액이 제4조 제1~4항의 거래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② 손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행위, 부정사용 또는 불법 사행산업에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 ③ 기타 은행이 정한 서비스 제공 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사망신고 접수, 1년 장기 미접속 등으로 앱 이용이 제한된 경우
  2. 서비스 장비의 보수, 업그레이드, 점검, 교체, 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3.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 (지급제한)

환전지갑은 명의변경, 양도 및 담보제공이 불가하며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외화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약관의 효력)

제휴사 별 본 약관의 최초 1회 동의만으로 향후 환전지갑 서비스 이용 시 동의를 효력이 유지됩니다.

#### 제12조 (손해배상 및 면책)

- ①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합니다. 다만, 부정ич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④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제13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외환거래 기본약관」,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14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구분)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손님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손님에게 손님과 사전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변경 즉시 손님에게 손님과 사전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이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손님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손님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전의 영업일까지 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 약관은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에 거쳐 제공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04.02부터 적용합니다.